



시 보



제1758호 2026. 9. 21.(월)

고시 · 공고

-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람 공고 2
- 「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
- 「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13
- 「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
- 「목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7
- 「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람 ·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해마을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1일

목 포 시 장

1. 사 업 명 :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
 2. 사업시행자 : 목포시장
 3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: 131필지, 38,573m²
 4. 지적확정조서 : 붙임 참조
 5. 공람기간 : 2026. 9. 21. ~ 2026. 10. 5.(14일간)
 6. 공람장소 : 목포시청 민원봉사실
 7. 공람 비치서류 : 별도첨부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 8. 문의처 :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(☎ 061-270-3669)
-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

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조서

번호	종전 토지				확정 토지				면적증감		소유자		비고
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증가(㎡)	감소(㎡)	성명	주소	
		132필지		38,915		131필지		38,573	1,073.1	1,415.1			-1필지 / -342㎡
1	용해동	427	대	291	용해동	427	대	285.0	0.0	6.0	김*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	
2	용해동	428	대	376	용해동	428	대	335.0	0.0	0.0	서*남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	
						428-4	대	41.0					
3	용해동	428-1	대	280	용해동	428-1	대	287.0	7.0	0.0	박*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새터로 * *동 ***호	
4	용해동	429	대	132	용해동	429	대	171.0	39.0	0.0	김*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중앙로 ***- *동 ***호	
5	용해동	430	대	165	용해동	430	대	193.0	28.0	0.0	박*운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*(광무동, 전남병원 별관 *층 특수검진센터)	
6	용해동	431	대	212	용해동	431	대	212.0	0.0	0.0	천*남	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*(용해동)	
7	용해동	431-1	대	216	용해동	431-1	대	196.0	0.0	20.0	목포시		
8	용해동	431-2	대	68	용해동	431-2	대	68.0	0.0	0.0	천*남	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*(용해동)	
9	용해동	432	대	542	용해동	432	대	537.0	0.0	5.0	이*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축선로 ** A동 ***호	
10	용해동	433-3	대	255	용해동	433-3	대	276.0	21.0	0.0	정*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11	용해동	433-4	대	43	용해동	433-4	대	65.0	22.0	0.0	김*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12	용해동	433-5	대	5	용해동	433-5	대	5.0	0.0	0.0	목포시		
13	용해동	433-6	대	8	용해동	433-6	대	8.0	0.0	0.0	목포시		
14	용해동	434	임야	33	-	-	-	말소	0.0	33.0	국(기획재정부)		
15	용해동	435	대	235	용해동	435	대	235.0	0.0	0.0	한*화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16	용해동	436	대	79	용해동	436	대	79.0	0.0	0.0	박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17	용해동	437	대	56	용해동	437	대	56.0	0.0	0.0	김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율로 *** ***동 ****호	
18	용해동	438	전	400	용해동	438	전	381.0	0.0	19.0	여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산정로 *** ***동 ***호	
19	용해동	439	대	436	용해동	439	대	436.0	0.0	0.0	박*남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20	용해동	440	대	199	용해동	440	대	299.6	100.6	0.0	박*동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-*	
21	용해동	440-1	전	624	용해동	440-1	전	486.6	0.0	137.4	박*동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-*	
22	용해동	441	대	191	용해동	441	대	181.0	0.0	10.0	홍*무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	
23	용해동	441-1	대	60	용해동	441-1	대	60.0	0.0	0.0	정*주(외 1명)		
24	용해동	441-2	대	80	용해동	441-2	대	67.0	0.0	13.0	홍*무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	
25	용해동	442	대	298	용해동	442	대	287.0	0.0	11.0	정*선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	
26	용해동	443	대	350	용해동	443	대	310.0	0.0	40.0	윤*자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-*	
27	용해동	444	대	83	용해동	444	대	127.0	44.0	0.0	김*숙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28	용해동	445	전	50	용해동	445	전	50.0	0.0	0.0	박*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호로 **	
29	용해동	446	도로	23	용해동	446	도로	23.0	0.0	0.0	윤*순	***	
30	용해동	447	대	311	용해동	447	대	160.0	0.0	0.0	김*순(외 1명)		
						447-1	대	151.0					
31	용해동	448	전	69	용해동	448	전	69.0	0.0	0.0	김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32	용해동	449	전	83	용해동	449	전	83.0	0.0	0.0	김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33	용해동	450	대	456	용해동	450	대	356.5	0.0	99.5	정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율로 *** ***동 ***호	
34	용해동	451	대	202	용해동	451	대	222.0	20.0	0.0	김*길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도목리길 ***-	
35	용해동	452	대	238	용해동	452	대	238.0	0.0	0.0	신*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
36	용해동	476-1	대	307	용해동	476-1	대	307.0	0.0	0.0	**마을회	***-	
37	용해동	476-2	대	260	용해동	476-2	대	260.0	0.0	0.0	김*성(외 1명)		
38	용해동	476-3	대	70	용해동	476-3	대	148.0	78.0	0.0	김*성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상동로 ** ***동 ***호	
39	용해동	477	대	705	용해동	477	대	669.0	0.0	36.0	김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40	용해동	478	대	871	용해동	478	대	836.0	0.0	35.0	사회복지법인**논어린이집	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,	
41	용해동	478-1	도로	32	용해동	478-1	도로	32.0	0.0	0.0	사회복지법인**논어린이집	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,	
42	용해동	480	대	223	용해동	480	대	212.0	0.0	11.0	임*민(외 1명)		
43	용해동	480-1	대	223	용해동	480-1	대	211.7	0.0	11.3	정*진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44	용해동	481	대	136	용해동	481	대	146.2	10.2	0.0	김*선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**번안길 *** ***동 ***호	
45	용해동	482	대	502	용해동	482	대	502.0	0.0	0.0	박*남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46	용해동	482-1	대	17	용해동	482-1	대	17.0	0.0	0.0	박*남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47	용해동	482-2	대	66	용해동	482-2	대	66.0	0.0	0.0	박*남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*번길 **	
48	용해동	483	대	268	용해동	483	대	268.0	0.0	0.0	황*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49	용해동	484	대	570	용해동	484	대	620.0	50.0	0.0	김*안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50	용해동	484-1	대	9	용해동	484-1	대	9.0	0.0	0.0	목포시		
51	용해동	485	대	502	용해동	485	대	484.0	0.0	0.0	서*훈(외 1명)		
					485-1	대	18.0						
52	용해동	486	대	334	용해동	486	대	334.0	0.0	0.0	서*훈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3	용해동	486-1	도로	6	용해동	486-1	도로	6.0	0.0	0.0	서*훈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4	용해동	487	대	62	용해동	487	대	62.0	0.0	0.0	서*훈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5	용해동	487-1	도로	1	용해동	487-1	도로	1.0	0.0	0.0	서*훈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6	용해동	488	대	243	용해동	488	대	243.0	0.0	0.0	서*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7	용해동	488-1	도로	74	용해동	488-1	도로	74.0	0.0	0.0	서*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58	용해동	489	대	218	용해동	489	대	218.0	0.0	0.0	김*미(외 1명)		
59	용해동	490	대	1,817	용해동	490	대	1,807.0	0.0	10.0	국(국가보훈부)		
60	용해동	490-1	전	264	용해동	490-1	전	264.0	0.0	0.0	박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앙중앙로 ** ***동 ****호	
61	용해동	490-2	도로	1,194	용해동	490-2	도로	1,389.9	292.1	0.0	목포시		
					490-5	도로	96.2						
62	용해동	490-3	전	513	용해동	490-3	전	513.0	0.0	0.0	박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앙중앙로 ** ***동 ****호	
63	용해동	490-4	전	42	용해동	490-4	전	42.0	0.0	0.0	박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앙중앙로 ** ***동 ****호	
64	용해동	491-1	대	357	용해동	491-1	대	372.0	15.0	0.0	신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65	용해동	491-3	도로	14	용해동	491-3	도로	14.0	0.0	0.0	주식회사*성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***	
66	용해동	491-4	도로	146	용해동	491-4	도로	138.2	0.0	7.8	목포시		
67	용해동	492	대	512	용해동	492	대	518.0	6.0	0.0	김*덕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68	용해동	493	답	952	용해동	493	답	952.0	0.0	0.0	김제**평구교과송와중중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*로 ***, ***동 ***호(성북동, 버들치마을 용인성북아이파크)	
69	용해동	494	전	231	용해동	494	전	231.0	0.0	0.0	김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	
70	용해동	495	전	476	용해동	495	전	455.0	0.0	21.0	김*용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백련로*번길 *** ***동 ****호	
71	용해동	496	전	595	용해동	496	전	595.0	0.0	0.0	김*운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***번길 * ***동 ****호	
72	용해동	497	전	590	용해동	497	전	590.0	0.0	0.0	윤*호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학산면 구흥길 **-	
73	용해동	497-3	도로	74	용해동	497-3	도로	74.0	0.0	0.0	목포시		
74	용해동	497-5	전	275	용해동	497-5	전	275.0	0.0	0.0	변*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로 *** ***동 ****호	
75	용해동	497-6	전	367	용해동	497-6	전	367.0	0.0	0.0	윤*호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**길 ** ***동 ****호	
76	용해동	498	대	1,167	용해동	498	대	1,167.0	0.0	0.0	정*실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	
77	용해동	498-3	도로	4	용해동	498-3	도로	4.0	0.0	0.0	정*실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78	용해동	498-4	도로	6	용해동	498-4	도로	6.0	0.0	0.0	정*실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-	

79	용해동	498-5	답	92	용해동	498-5	답	75.3	0.0	16.7	번*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로 ***동 ****호	
80	용해동	499	전	264	용해동	499	전	205.0	0.0	59.0	정*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호로***번길 **동 ***호	
81	용해동	500	전	93	용해동	500	전	93.0	0.0	0.0	김*범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석현로 **동 ***호	
82	용해동	501-3	도로	25	용해동	501-3	도로	25.0	0.0	0.0	주식회사*성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***	
83	용해동	501-5	도로	26	용해동	501-5	도로	26.0	0.0	0.0	강*순(외 1명)		
84	용해동	501-6	대	14	용해동	501-6	대	14.0	0.0	0.0	김*술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*	
85	용해동	503	대	314	용해동	503	대	294.7	0.0	19.3	김*술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*	
86	용해동	504	전	340	용해동	504	전	299.0	0.0	41.0	김*이	전라남도 목포시 삼동로 **, ***동 ****호(상동현대아파트)	
87	용해동	504-2	전	144	용해동	504-2	전	110.0	0.0	34.0	김*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***	
88	용해동	505	전	374	용해동	505	전	374.0	0.0	0.0	김*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***	
89	용해동	506	전	63	용해동	506	전	63.0	0.0	0.0	김*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***	
90	용해동	506-1	도로	12	-	-	-	말소	0.0	12.0	김*영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행하길 *동 ***호	
91	용해동	507	답	100	-	-	-	말소	0.0	100.0	이*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구 동배마을길 **동 ***호	
92	용해동	508	전	59	용해동	508	전	121.1	62.1	0.0	목포시		
93	용해동	509	대	474	용해동	509	대	509.0	35.0	0.0	최*숙(외 4명)		
94	용해동	509-1	도로	55	-	-	-	말소	0.0	55.0	최*숙(외 4명)		
95	용해동	509-2	도로	7	-	-	-	말소	0.0	7.0	최*숙(외 4명)		
96	용해동	510	대	448	용해동	510	대	448.0	0.0	0.0			
97	용해동	510-1	도로	91	용해동	510-1	도로	91.0	0.0	0.0	서*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	
98	용해동	511	대	119	용해동	511	대	119.0	0.0	0.0	서*석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***	
99	용해동	512	대	374	용해동	512	대	374.0	0.0	0.0	김*별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*	
100	용해동	513	대	328	용해동	513	대	353.0	25.0	0.0	김*성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*	
101	용해동	514	대	195	용해동	514	대	181.0	0.0	14.0	오*길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	
102	용해동	515	대	238	용해동	515	대	238.0	0.0	0.0	김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	
103	용해동	515-1	도로	5	용해동	515-1	도로	5.0	0.0	0.0	목포시		
104	용해동	515-2	대	99	용해동	515-2	대	70.0	0.0	29.0	김*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	
105	용해동	515-3	도로	15	용해동	515-3	도로	15.0	0.0	0.0	목포시		
106	용해동	516	대	466	용해동	516	대	466.0	0.0	0.0	주식회사**건설	전라남도 목포시 남악*로 **번길 **, 주상가동 ***호(목암*휴먼시아)	
107	용해동	517	대	433	용해동	517	대	433.0	0.0	0.0	이*훈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**동 ***호	
108	용해동	518	대	387	용해동	518	대	352.0	0.0	35.0	임*자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*길 **B동 ***호	
109	용해동	519	대	585	용해동	519	대	607.0	22.0	0.0	이*창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**	
110	용해동	520	대	555	용해동	520	대	539.0	0.0	16.0	김*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***동 ***호	
111	용해동	521	대	345	용해동	521	대	378.0	33.0	0.0	임*자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*길 **B동 ***호	
112	용해동	521-1	대	111	용해동	521-1	대	111.0	0.0	0.0	서*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*번길 *	
113	용해동	521-2	대	84	용해동	521-2	대	84.0	0.0	0.0	임*자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*길 **B동 ***호	
114	용해동	521-3	대	128	용해동	521-3	대	128.0	0.0	0.0	임*자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*길 **B동 ***호	
115	용해동	523-3	도로	4	용해동	523-3	도로	4.0	0.0	0.0	이*대(외 1명)		
116	용해동	527-1	대	1,280	용해동	527-1	대	1,280.0	0.0	0.0	김*훈(외 1명)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로 ***동 ***호	
117	용해동	527-6	전	1	용해동	527-6	전	1.0	0.0	0.0	목포시		
118	용해동	527-8	전	60	용해동	527-8	전	60.0	0.0	0.0	김*훈(외 1명)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로 ***동 ***호	
119	용해동	527-9	전	201	용해동	527-9	전	201.0	0.0	0.0	김*훈(외 1명)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로 ***동 ***호	
120	용해동	936	구거	1,104	용해동	936	구거	974.0	0.0	130.0	국(국토교통부)		
121	용해동	937-9	도로	70	용해동	937-9	도로	47.1	0.0	22.9	국(국토교통부)		
122	용해동	937-10	구거	54	용해동	937-10	구거	54.0	0.0	0.0	국(국토교통부)		

123	용해동	937-11	구거	664	용해동	937-11	구거	690.7	97.7	0.0	국(국토교통부)	
						937-14		71.0				
124	용해동	938	도로	3,760	용해동	938	도로	3,605.9	0.0	138.1	국(기획재정부)	
						938-9		16.0				
125	용해동	938-3	도로	31	용해동	938-3	도로	21.3	0.0	9.7	국(기획재정부)	
126	용해동	938-4	도로	35	-	-	-	말소	0.0	35.0	국(기획재정부)	
127	용해동	938-5	도로	12	-	-	-	말소	0.0	12.0	김*성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묵포시 관해로*번길 **~*
128	용해동	938-6	도로	7	용해동	938-6	도로	7.0	0.0	0.0	국(기획재정부)	
129	용해동	939-2	구거	525	용해동	939-2	구거	590.4	65.4	0.0	국(국토교통부)	
130	용해동	939-4	구거	67	용해동	939-4	구거	62.0	0.0	5.0	국(국토교통부)	
131	용해동	939-5	구거	136	용해동	939-5	구거	76.6	0.0	59.4	국(국토교통부)	
132	용해동	940-13	도로	998	용해동	940-13	도로	959.0	0.0	39.0	국(국토교통부)	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1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·지급함으로써,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“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” 신설(안 제4조 제5호)
 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: 월 5만원 지급
- 시행일(부칙)
 -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관계법령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등의 책무)

5. 관련부서 의견

- 예산사항(기획예산과) : 예산 수립 필요
-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(감사실) : 원안 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9. 21. ~ 2026. 10. 11. (20일)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9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0일까지 목포시장(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

목포시청 사회복지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645), 직접방문 등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(☎061-270-84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조례 제 호

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<u>참전유공자</u> 로 한다. <u>다만,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단서 신설 2013·4·10, 개정 2018.5.8., 2020.5.25.></u>	제3조(지원대상자) ----- ----- <u>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</u> ---. <u>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u>
제4조(지원사업) ①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☐ 조 례 명 :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1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26년 목포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전 발생 빈도가 낮은 ‘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’를 비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함.
- 협의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조례 일제 정비

2. 주요내용

-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기준 마련 및 임기 삭제, ‘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’ 비상설 운영체제로 전환(안 제10조제2항, 제4항)
- ‘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’ 회의 소집, 의결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신설(안 제11조)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

○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6. 관련부서 의견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○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| : 의견없음 |
| ○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 | : 의견없음 |
| ○ 규제심사 대상(기획예산과) | : 해당없음 |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9. 21. ~ 2026. 10. 12. [21일간]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(58613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
목포시청 자치행정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FAX(061-270-3579), 직접 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
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061-270-8572)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협의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2조 및 제18조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 중 “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후생복지 사업 등

제12조 앞의 “제5장 보 칙”을 삭제한다.

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제13조를 제19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 (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)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0조 (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“협의회”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위원은 부시장, 인사·복지·보건업무 담당국장, 예산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,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, 공무원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	③ ----- 협의회----- - .
④ 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	④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

수 있다.

⑤ · ⑥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의2 ~ 제10조의6 (생 략)

제11조(수당 등 실비변상) 의회의
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
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목포시
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
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
급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<신 설>

제12조 · 제13조 (생 략)

해산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
회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이
소집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이
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
는 서면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
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후생복지 사업 등

제13조 ~ 제17조 (현행 제10조의
2부터 제10조의6까지와 같음)

제12조(수당 등 실비변상) 협의회

-----.

<삭 제>

제6장 보 칙

제18조 · 제19조 (현행 제12조 및
제13조와 같음)

[붙임3]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1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개정(‘26.1.1. 시행)에 따라 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“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” 명칭을 “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변경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관계법령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이상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이상없음
-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9. 21. ~ 2026. 10. 12. (21일간)

7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8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(기후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 방문

다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청 기후환경과(기후변화팀)

- 주소 : (우 58724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, 4층 기후환경과
- 전화 : 061-270-8543, 팩스 : 061-270-3585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(☎061-270-854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「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·운영)”을 “(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28조제4항 중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	제9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<u>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 <u>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3장 목포시 <u>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	제3장 목포시 <u>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
제11조(<u>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 의 구성·운영)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<u>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1조(<u>목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 의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후위기 대응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8조(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) ① ~ ③ (생략)	제28조(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목포시 기후위기 적	④ -----

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
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 기후위기대응위원회-----
-----.

「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

「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1.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「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」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3조제1항)
 -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에 있어 성별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‘위원으로’ ⇨ 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’로 정비
- 위원 임기 조항 삭제(안 제3조제6항)
 -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

○ 임기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4조)

-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‘임기중이라도 위원을’ ⇨ ‘위원을’로 관련 조문 내용 정비

○ 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(안 제5조)

-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‘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’하도록 운영방식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(감사실)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자체개선안 동의

7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 : 2026. 9. 21. ~ 2026. 10. 12. (21일간)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
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. 10. 12.까지 목포시장(재난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

- (58613)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재난안전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8657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재난안전과(☎061-270-86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1】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 으로”를 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6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을 다음”을 “위원이 다음”으로, “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”을 “위원을 위촉 해제할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)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<u>위원</u> 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위원</u> <u>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u> ----- 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</u> <u>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</u> <u>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</u> <u>은 기간으로 한다.</u>	<삭제>
제4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<u>위원</u>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임기 중이라도 위원</u> <u>을 위촉 해제</u> 할 수 있다.	제4조(위촉 해제) ----- ----- <u>위원이 다음</u> ----- ----- <u>위원을 위촉 해제할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) 위원회의 활동은 <u>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</u>	제5조(운영) 위원회는 <u>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안전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</u>
1. <u>평상시 :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</u>	
2. <u>재난 발생시 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</u>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 치 법 규 명 :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「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1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(3년 이상) 개최되지 않은 목포시사 편찬위원회를 안전 발생시에만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안전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[안 제3조제4항]
 - 가. 위원회를 안전(시사 편찬 사업) 발생 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
-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[안 제6조 및 제7조]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5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6. 입법예고 : 2026. 9. 21. ~ 10. 12. (21일)

7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(도시유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참고사항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8292), 직접방문 등

다. 의견제출처 : (58724)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, 5층 도시유산과

8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유산과 문화유산팀(☎061-270-83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☐ 조 례 명 :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성 및 임기)”를 “(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위원회는 안건(시사 편찬 사업)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기 중이라도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”를 “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 (구성 및 임기) ① ~ ③ (생략) ④ <u>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원</u>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3조 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위원회는 안건(시사 편찬 사업)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
제6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<u>임기 중이라도 위원</u> 을 해촉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제6조 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.
제7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<u>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</u> 회의를 소집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7조 (회의) ① ----- ----- - <u>회의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